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62 / 전송(02)793-5208
학술면허국장 김성진(6564) 학술면허관리팀장 이현호(6553) 담당 전지숙(6562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493-5345호

시행일자 2026. 8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및 「실무운용지침」 개정 시행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2026-92호(2026.07.21.)

3. 상기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「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」 및 「실무운용지침」을 개정·시행함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개정 내용을 알려온바, 이를 귀 회의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「실무운용지침」 신규 대비표 주요내용(상세내용 붙임 참조)

개정 전(실무운용지침)	개정 승인(실무운용지침)	시행
제15조 (전시·광고) ① 규약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원사는 요양기관등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 (신설)	제15조 (전시·광고) ① 규약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원사는 요양기관등에 광고비 또는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 <u>본조에서 학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</u> 1. <u>학회라 함은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</u>	26.7.20.

개정 전(실무운영지침)	개정 승인(실무운영지침)	시행
(신설)	다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「약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·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의·약학 관련 학술 목적으로 승인·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 2. 요양기관등이라 함은 개별 요양기관 및 제1호의 ‘학회’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·약학 관련 학술단체를 말한다.	
(신설)	④ 회원사는 학회 및 요양기관등이 개최하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. 부스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. 1.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: 건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. 2. 요양기관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: 건당 50만원 내지 100만원 3. 공동주최 또는 공동주관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경우, 지급 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이 낮은 금액 기준에 따른다. 4. 회원사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5.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는 의·약학 연수평점 3평점(최소 3시간)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 6. 부스비 지급이 허용되는 학술대회의 참석자(등록자)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되며, 50명 이상(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 이상)이어야 한다.	26.7.20.

※ 붙임 :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련 공문(및 붙임자료 일체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 의사
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